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정식<br>(고용노동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3.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의 시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함

다.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산하조직”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표하는 경우 제11조의8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의 신설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9의 신설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표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1조의9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제11조

의8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u></p> <p><u>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u></p> |
| <p><u>&lt;신 설&gt;</u></p> | <p><u>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u></p>                                                                                                                                                                                                                                                                                                                 |

<신 설>

조의9제1항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산하조직”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공표하는 경우 제11조의8에 따른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                  |
| 연 락 처         | (044) 202 - 7695 |